

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 제 2 항 중 “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”을 “고율의 금융상품”으로 하고,
동조제 4 항의 “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”을 “기금운용관과 기금
출납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